



단국대학교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2018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학칙시행세칙 제12조(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)의 6항, 7항

나. 학칙시행세칙 제12조의2(유고결석자 출석인정)

2. 2018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 속지 및 소속 교·강사 전원에게 공지하여 엄정한 출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인정사유 : 10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(세부 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1 참조)

나. 절차(세부방법 붙임1 참조)



다. 주요 변경사항

1) 일반사유 개정(학생선수 사유는 동일)

인정사유	인정기간	증빙서류	비고
4촌 이내의 친족 사망	당일부터 3일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	형제·자매 등의 사망 사유 명확화
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	2주 이내	1. 진료비 영수증 2. 진단서, 입원확인서(선택1)	인정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
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	해당일	해당 부서장 확인서	신설

※ 단순질병 및 치료(몸살감기, 단순 복통/두통, 장염/위염, 안과/치과치료, 정기검진, 비염, 두드러기, 가벼운 타박상 등)는 사유 불가함

2) 신청(접수)기간 개정 :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(최종학기 취·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)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함 단,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은 제외함

라. 유의사항

1) 증빙서류 위·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하므로 증빙서류 접수 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(2017~2018-1학기에 위·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)

2)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

3)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[2018. 9. 3(월)] ~ 성적공시(입력)기간 종료일[2018.12.24.(월)]까지 가능함

4) 행사에 대한 총장 승인관련 증빙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도 인정함

마. 참고사항

- 1)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문 : 붙임2
- 2)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세부안내(학생안내용) : 붙임3

- 붙임 1. 2018-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세부 안내(대학안내용) 1부.
2.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학사공지 안내문 1부.
3. 2018-2학기 유고결석 신청 안내(학생안내용) 1부. 끝.

천안캠퍼스 교무처장

수신자 각 대학장(교학행정팀장)

주임 김규태 팀장 이명우 처장 08/03
장원철

협조자

시행 학사팀(천)-1916 (2018.08.03) 접수 보건과학.간호대학.보건복지대 ()
(우)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/ http://www.dankook.ac.kr
전화 041-550-1222 전송 041-559-7806 / kkt5791@dankook.ac.kr / 공개
수신